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5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정혜경 · 손 술 · 전종덕
윤종오 · 한창민 · 용혜인
이재강 · 최혁진 · 서미화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직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거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

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기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민간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민간단체 등이 하도록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직대통령의 모습, 호(號) 또는 성명을 나타낸 그림, 사진, 영상물, 조형물 또는 그 밖에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 도로, 공원, 조형물 등의 명칭에 전직대통령의 호(號) 또는 성명을 포함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행위

제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

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념사업의 <u>지원</u>) <u>민간</u> <u>단체</u>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5조의2(기념사업의 <u>지원 등</u>)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u> <u>체</u> ----- ----- -----.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u> <u>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u> <u>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u>하거나 민간단체 등이 하도록</u> <u>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전직대통령의 모습, 호(號)</u> <u>또는 성명을 나타낸 그림, 사</u> <u>진, 영상물, 조형물 또는 그</u> <u>밖에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설</u> <u>치하는 행위(제7조제2항에 해</u> <u>당하는 내용을 전시하거나 설</u> <u>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u>건물, 도로, 공원, 조형물 등</u> <u>의 명칭에 전직대통령의 호</u> <u>(號) 또는 성명을 포함시키는</u> <u>행위</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생 략)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는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행위</u>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 당하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 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 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 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	---